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(안 제11조)

나.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(안 제12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2023. 5. 16. 법률 제194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. 11. 17. 시행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 개정 내용의 법 적합성 및 타당성

- 조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안 제11조는 조문명과 내용을 ‘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’에서 ‘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’로 수정함. 안 제11조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취지 및 설치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고, 안 제12조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양 조문이 명확하게 구분됨.
- 안 제12조의 조문명을 ‘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’에서 ‘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’으로 하고, 안 제12조제1항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상위법령의 운영 기준에 따라 수정함.
- 충북은 도내 시·군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는데, 상위법령(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나목)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 △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, △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, △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지원 업무를 규정함.

- 또한, 상위법령(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2호) 내용을 반영하여 광역이동 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 한다는 내용의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함.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4. 8. 16.~'24. 9. 5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조례 개정 이후 원활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도내 시·군 및 다른 지역 이동지원센터 간 연계,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홍보,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의견 수렴 등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